

#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농가의 이용방법



유 동 준  
한국단미사료협회 상근부회장

## 1. 머리말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0일(수) 제184회 국회에 상정된지 8분만인 늦은 8시 28분에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통과 되었다. 국회의장은 8월 16일(토) 통과된 의안내용을 정부에 이송하였다.

정부는 8월 16일 고건 국무총리가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을(의안번호 제56호) 의결사항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고 8월 30일(토) 법률 제5,402호로 공포하였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토록 되어있다. 만일 15일 이내 공포치 않을 경우 정부가 거부하는것이 되어 커다란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에서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7조(부가가치세 적용례)에서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이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토록 명시하여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8월 30일 법률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

작년 11월 29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통과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행기간을 상당기간 유보한것과는 대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추진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었다. 당시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자체도 불투명할 때라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제기할 경우 배합사료 마저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위로부터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대한 검토가 있는 후 11월 29일(금) 제181회 국회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해당위원회 의원들이 거론토록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제기하였다.

당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원길의원과 여러의원들이 배합사료와 동시에 시행할 것을 주장하자 재정경제원은 난색을 표하여 정회까지 해야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지금은 의정활동이 불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당시 재정경제위원장인 황병태의원의 슬기로운 사회로 당시 재정경제원 이환균차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제181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에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지난 제184회 국회에 제출한 법안중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조세감면 규제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치 않았다.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지난 4월 22일 재정경제위원장 관과 농림부장관에게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입법추진요청”을 하였으나 마이동풍 격이었다.

자칫하다가는 제184회 국회회기중에 성사되기 어려울것같아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3당간사를 소개의원 공동대표로하고 공동대표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72명의 소견서와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10일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낙농.육우 양축가에게 제일먼저 상당한 혜택이 있을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알리므로 앞으로 축산진흥을 위한 법률제정 및 개정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2. 재경위원장, 농림부장관 및 국회재경위원장에 입법추진요청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지난 4월 22일 재정경제위원장 관과 농림부장관 및 국회재정경제위원장에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입법 추진요청”을 하였다.

1996년 11월 29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을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가 아닌 ”사료관리법상의 『사료』로 해야 타당하다는 의견이 여러의원들로부터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당시 재경원 이환균차관이 “세수액”이 크지않으면 재경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당시 제

181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제14호)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배합사료』와 동시에 『단미사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하여 달라는 청원을 한것이다.

## 3.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청원제출

### - 여.야72명 국회의원 소개의견서 받아 -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지난 6월 10일 여.야 국회의원 72명의 서명을 받아 단미사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도록하여 달라는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 -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위한 청원

- 올바른 입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의 노고에 항시 고마움을 갖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181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개최 ('96. 11. 29(금)) 결과와 관련 됩니다.(덧붙임 : 제181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14호)

- 당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을『배합사료』가 아닌 사료관리법상의 『사료』로해야 타당하다는 여러의원님들의 제의가 있어 논란이 제기된바

“단미사료 부가세액을 파악하여 세수감소가 100억 원 미만이면 '97. 7. 1부터 배합사료와 동시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는(다만, 동 부가세액이 두자리를 넘어서 몇백억일 경우는 적용여부 재검토) 위원장의 양해하에 조세감면규제법안이 상정되었고 이에 당시 재경원 이환균차관께서도 “세수액이 크지 않으면 재경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단미사료는 현재 거의 전량이 배합사료원료로 공급되고 있으나 양축가와 직거래될 경우 직거래된 물량만큼 배합사료공 급량이 줄어들고 그에따른 부가세액은 단미사료 부가세액으로 변경될뿐 전체 부가세액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 상호대체현상이 있을뿐 세수감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이에따라 한국단미사료협회는 '97. 3. 14 ~ 3.

23일까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단미사료(섬유질)부가세액을 조사한 바 덧붙임과 같이 총 44개업체의 연간 납부 총액은 20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는 영세율적용을 받게되나 영세소규모기업에서 생산하는 단미(섬유질)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는 영세율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이 형평과세의 원칙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 더욱이 단미사료를 구입하는 영세양축농가에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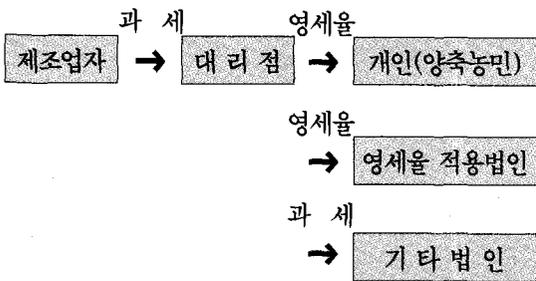
#### 4.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7월 30일(수) 늦은 8시 28분 국회 통과 -

“단미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을 주요 골자로한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0일(수) 제184회 국회(임시회)에 상정, 8분만인 늦은 8시 28분에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5. 단미사료 공급유형별 영세율적용 여부

##### 가. 대리점 등을 통한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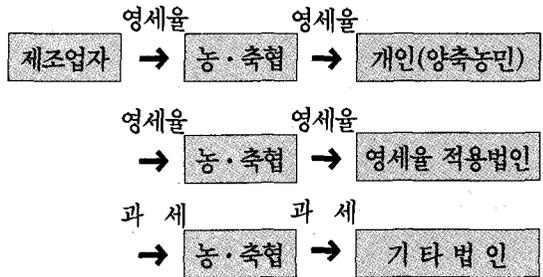
##### ❖ 업소별 업무처리 요령

- 판매업자(대리점)
  - 개인(양축농민)에게 직접 공급시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판매 기록표의 기재사항 확인
  - 영세율 적용법인에 공급시 : 영세율적용확인서 제시 요구 및 확인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판매기록표”(별지 3호 서식) 작성·비치

- 일반법인에게 공급시 : 영세율 적용 관련서류 불필요
-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별판매액합계표 첨부
- 제조업자
  - 과세공급자이므로 영세율 적용 관련 서류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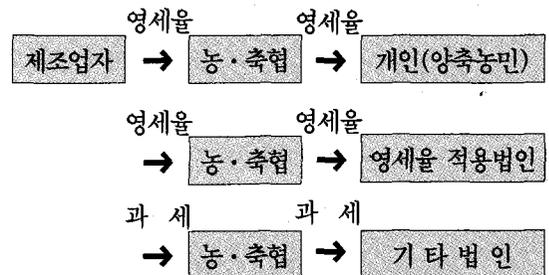
#### 나. 농·축업을 통한 공급

(1) 시지역에서 매취구입하는 경우



##### ❖ 업소별 업무처리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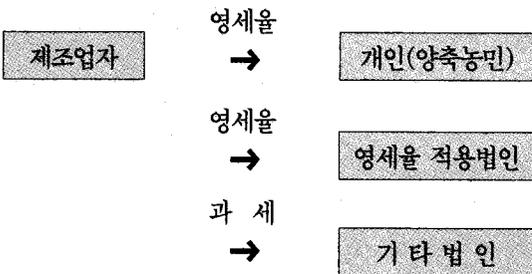
- 농·축협(사료판매장)
    - 영세율 적용 법인에게 공급시 : 영세율 적용확인서 제시 요구 및 확인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판매기록표”(별지 3호 서식) 작성·비치
    - (구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판매품명·단가·수량·판매가액 기재)
    - ※ 거래당 판매가액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단가·수량은 기재 생략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별판매액합계표 첨부
  - 제조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품확인서 첨부
- (2) 읍·면지역 매취구입하는 경우



❖ 업소별 업무처리 요령

- 농·축협(사료판매장)
  - 영세율 적용 법인에게 공급시 : “영세율적용확인서” 제시 요구 및 확인
  - 양가농가에게 직접공급시 : “농·축산·임·어업 용기자재 판매기록표”별지 3호 서식) 작성·비치 (구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판매품명·단가·수량·판매가액 기재)
    - ※ 거래당 판매가액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단가, 수량의 기재 생략할 수 있음.
- 제조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품확인서 첨부

다. 제조업자를 통한 공급



❖ 업소별 업무처리 요령

- 제조업자
  - 영세율적용 법인에게 공급시 : “영세율적용확인서” 제시요구 및 확인
  - 양축농가에게 직접공급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판매기록표” (별지 3호 서식) 작성·비치 (구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판매품명·단가·수량·판매가액 기재)
    - ※ 거래당 판매가액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단가, 수량은 기재 생략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별판매액합계표 첨부

6. 영세율적용 문답자료

문 11 법인의 경우 영세율 사료를 공급받기 위한 절차는?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 법인 확인서” (국세청고시 제1997-18호, '97. 7. 8)를 발급 신청. 교부받아 사료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 확인서발급 신청시 구비(첨부)서류
  -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 축산업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90%이상 또는 축산업용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90%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제무제표)
  - 농업인 또는 상근임직원이 총출자지분의 2/3이상을 출자 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 ◆ 상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임원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계열화법인의 경우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가축계열화사업자 확인서” (농림부 훈령 제904호, '97. 7. 1)를 교부받아 사료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 확인서발급 신청시 구비(첨부)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 ◆ 농가와 계열사업자간의 위탁사육 계약서 사본
  - ◆ 계열농가별 사육규모(전화번호 포함) 현황
  -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문 12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등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계열화법인은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업 허가 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받은 계열화 법인만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가축계열화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사료

비절감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열화사업자에 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한것이므로 축산업허가를 받거나 계열화 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열화사업을 영위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 확인서 발급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문 3)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계열화법인의 경우 영세율적용 사료를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는 가축용사료분”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사육”의 범위 또는 정의는?**

- ㉸ 가축계열화사업은 생산, 가공, 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일정소득을 보장받고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므로써 생산비절감 및 품질향상을 기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열업체와 농가간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형태는
  - ◆ 계열주체가 생산한 가축과 사료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는 이를 사육하여 납품한 후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위탁사육)와
  - ◆ 가축, 사료 등을 농가가 부담하여 사육토록 한 후 계열주체가 일정가격으로 구매하는 형태가 있음.
  - ◆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위탁사육은 계열주체가 가축과 사료 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임.

예시 1) 육계 양돈의 경우 농민이 스스로 병아리, 자돈, 사료등 축산물생산을 위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가축을 사육, 축산물을 생산하고, 회사(계열주체)와는 축산물을 년중 고정가격으로 공급, 구매한다는 고정공급(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사육(생산)으로 보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이 경우 가축 계열화 사업이지만 위탁사육으로 볼수 없음. 다만, 농민이 직접 구입하는 사료는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음.

예시 2) 비육돈 계열화법인이 양축농민에게 위탁사육시킬 자돈을 생산하기 위해 모든 200두를 자체사육하는 경우 모든 사육에 필요한 사료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계열주체가 생산하여 농가에 위탁사육하는 가축만이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되며 모든 200두는 계열화법인이 직접사육하는 가축이므로 위탁사육하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문 4) “농업인 또는 상근임직원”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지분의 2/3이 상인 법인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사료를 공급토록 제한하고 있는데 농업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업인”은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은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의 생산업, 양잠업, 종묘생산업,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업, 부화업, 종축업을 말함.

**문 5) 축산관련 연구소, 기업의 실험목장등에서도 영세율적용 배합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 ◆ 특례규정 제2조(농·어민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민이나 어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축산법인, 학교나 연구기관의 실험목장, 기업의 실험목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 교도소등에서 사육되는 가축에게 공급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

**문 6) 영세율적용 사료 공급자의 부가세 신고서 첨부서류는?**

㉞ 영세율 첨부서류

- ◆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총리령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 농·축·수협이나 어촌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

㉞ 이외에 부가세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단, 당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

- ◆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 한계세액공제계산서
-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교부받은 계산서, 영수증), 매입액 미공제분 계산근거
- ◆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
- ◆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집계표, 수취명세서, 금전등록기 정산표
-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
-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문 9] 수입되는 사료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㉞ 부가세 영세율 적용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모든 사료이므로 수입업자가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국산 사료와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 가능함.

문 8] 사료의 유통형태중 위탁공급제도가 있는 바 이때 위탁점을 통해 사료를 공급받는 개별농민도 영세율적용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㉞ 위탁점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양축농가를 중간관리하고 사료공급대가를 수급하는 업무에 한하며, 사료는 제조업체에서 양축농가에 직접

공급되며 세금계산서도 제조업체가 개별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발급하게 됨.

㉞ 당해 위탁대리점은 단순히 제조업체의 소비자 관리 또는 수급을 대행하고 관리수수료만을 받는 것이며 배합사료의 거래는 제조업체와 양축농가간에 직접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문 9]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사료로서 "농민 또는 어민(영세율 적용법인 포함)에게 공급할 경우에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자연인)이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공급자는 단순히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함으로써 적법하게 사료를 공급하였다 할 수 있는지?

㉞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법인포함)이외의 자에게는 영세율적용 사료를 공급할 수 없으며, 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는 농어민에게 판매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아야 할 것임.

문 10] 사료 공급자는 법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지?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는지?

㉞ 공급자는 법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면 되며, 이를 보관·관리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할 필요가 없음(특례규정 제2조 5항, 제4조내지 제5조)

9. 맺음말

지난해 11월 29일(금) 14시 29분 개의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원길의원, 이상만의원등 여러의원들이 소위원회에서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문제만 다루었는데 생각이 못미친 결정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단

미사료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으로 법형평상에도 문제가 있다.

단미사료를 포함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배합사료도 안해주어야 한다는 강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로인하여 15시 18분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중에 협의를 거쳐 15시 34분 속개하고 단미사료의 영세율적용으로 세수감소가 100억 이내일 경우 '97년 7월 1일 배합사료와 동시에 시행하고 두자리 숫자를 넘어 몇백억일 경우 다시 검토한다는 양해하에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이 국회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본회를 통과 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금년 임시국회 제출법안에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제출치 않았다.

재정경제원은 벤처기업등 중소기업의 창업과 재무구조개선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SOC투자 확충지원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88올림픽 조직위 수준으로 세제지원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성업공사)에 대해 세제지원 금융기관간 사실상 합병(영업전부양도)에 대해 세제지원에 대한 개정안만을 제출하였다.

금년 5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정세균 재정경제위원은 강경식 부총리에게

- "지난해 11월 조세감면규제법안 개정심의시 여러의원님들이 단미 사료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영세율 적용을 촉구하고 소위원회 에서도 논의되어 당시 재경원차관(이환균) 역시 단미사료에 대해서도 세수감소가 크지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신한바 있다.
- 따라서 연간 세수감소 20억원 정도에 불과한 단미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바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고 다그쳐 국회 의견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5월 26일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위원회 국회보좌관에게 「제184회 임시국회 입법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회 보좌관들도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시행토록 해야 된다는 촉구 발언들이 있었다. 이때도 국회 의견을 받아드리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으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란 얘기가 바로 이런경우가 아닌가 한다.

정부제출법안으로 추진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했고 의원입법또한 시기적으로 쉬운일이 아니었다. 궁리끝에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차수명의원.김원길의원.김범명의원을 소개의원 공동대표로 하는 청원서 제출을 서둘렀다. 소개의원 공동대표를 포함한 72인의 국회의원의 소개서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재정경제위원회간부분들의 올바른 입법정신은 청원서를 제출한지 한달 20일만인 7월 30일 본회를 통과 8월 30일 공포시행토록하여 주었다. 국회는 정부의 입장도 최대한 배려하여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재정경제위원장이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제184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개 법안중 중소기업 창업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만을 받아드리고 나머지 5개 법안을 폐기한채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이 의사일정 73개 법안중 16번째로 상정됐다.

국회의장이 상정과 통과되었음을 선포할 때 의사봉 소리는 어느때보다도 크게 국회본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애써준 모든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가하면 양측농가의 경쟁력확보에 일조를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

(필자연락처 : 02-585-2223)